

런 정보개념에서 출발했기에 1960년대까지도 신문이나 방송을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해석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어법으로 보였다. 우리 사회의 대중매체는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때부터 이미 정보관의 구축이 아예 결여되고 언론으로만 사회적 인식이 구축되어 버렸다.

셋째는 언론 개념의 포괄적 해석과 인터넷 언론 개념 규정의 재검토이다. 앞에서 매체 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언론은 매체의 양식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호칭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매체 양식을 포괄하여 “언론”으로 명명하는 경우 공중이 가지는 언론권(right to speak)의 위상은 모호해져 버린다는 점이다. 공중의 언론권은 가장 기초가 되며 언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편집권도 반론권도 의미가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볼 때 “언론” “정보”등은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며 재평가가 필요하다.

넷째는 규제와 보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다. 방송의 경우 공업선진국의 시각을 보면 규제보다는 보호에 더 치중한다. 그 이유는 방송의 존재 양식이 공영 중심에서 민영 확대로 나아가면서 방송이 언론의 속성과 함께 문화상품으로서의 속성도 동시에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양자의 차이는 규제가 개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지만 이에 비하면 보호는 개인이나 공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단 장치의 장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활동은 규제의 전통이 핵심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공업선진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호의 차원에서도 중재를 연계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제4, 5매체의 사회적 제도화 동향은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 법제화하고 있고 중재 역시 이러한 취지를 확대 해석하는 시도도 가능하다.

VIII. 결론

본 발제는 공동 논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여 구성되었다. 첫째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 대중적으로 정착한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한 의미의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우리의 언론 출판 정보의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있다. 신문 방송 등과 같은 대중매체 중심로의 인식 편향은 공중이 의견 표현을 하는 자유, 즉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위치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롭게 조성되는 인터넷 중심의 표현 행위를 언론으로 규정짓는데도 상당한 혼돈이 야기 될 수 있다. 매체는 공학기술의

개발에 따라 제5매체인 디지털 다중매체로까지 개발되어 왔고 언론 양식은 매체의 계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언론의 어휘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성립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공론장을 언론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도적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부가가치 통신으로 규정하여 아직도 어느 영역까지 어떠한 시각에서 언론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제도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표현과 함께 윤리적 책임이 부가되는 보완이 필요하다. 인터넷 언론의 경우 제3, 제4 매체의 언론 양식을 수용하여 독특한 제5 매체로서의 언론 양식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 언론관이나 대중매체에 대한 시각을 연장하면서도 그 자체로서의 특성을 살린 언론 규정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언론중재의 성격을 제3 매체로부터 제5 매체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시도와 이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신문 방송 등 제 4매체 표현 중심 언론 중재의 성격 규정은 상당히 축소지향적이며 매체의 특성과 새로운 매체의 발생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중재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제도적 기능 문제의 확대 강화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 철학에 기초한 타당성의 확립에도 기여하게 된다. 제5 매체 언론인 인터넷 언론의 규정의 연원은 제3 매체의 디지털 시대에 따른 변용형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넷째는 외래의 언론 사조 수용과 개념의 번역 적용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speech와 press의 번역 혼돈, editing과 programming, information의 “보도”로 번역, mass media,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등을 “언론”으로 번역하는 일은 제도적 기반에까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하며 무엇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는 보다 구체적 보완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언론중재의 영역과 성격 설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